

[붙임 1] 특수조건

한국외국인학교 스쿨버스 입찰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한국외국인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체) 등록을 받은 자 (이하 “버스 회사”라 한다)가 행하는 한국외국인학교 스쿨버스 임차용역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스쿨버스 운행”이라 함은 “버스 회사”가 자사 소유의 버스를 이용하여 “학교장”이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해당 학생 및 교직원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역수행 기간)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수송대상)

“버스 회사”는 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교 행사 참석자를 수송한다.

제5조(용역의 범위)

1. “버스 회사”는 학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스쿨버스를 운행한다. 이를 위하여 스쿨버스의 세차·정비·수리 등 스쿨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일체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또한 버스 회사는 학교가 요청하는 기타 스쿨버스 운행관련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등.하교 시 “버스 회사”는 지정된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및 상담 유인물 비치와 배포, 홍보 운행 등 대행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학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차량의 관리/운영/계획, 운전자의 조직, 근무 편성, 근무 요령, 인원 교체 등에 대하여 “버스 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버스 회사”는 “학교”와의 협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버스 회사”가 채용한 운전자 및 소속 직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대행기준)

1. “버스 회사”는 “학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차량을 운행한다. 이를 위하여 차량의 세차·정비·수리 등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일체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또한 “버스 회사”는 “학교”가 요청하는 기타 차량 운행 관련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등.하교 시 “버스 회사”는 지정된 운행 노선 및 운행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차량의 관리/운영/계획, 기사의 근무편성, 근무요령, 인원 교체 등에 대하여 “버스 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버스 회사”는 “학교”의 지시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자를 두고 직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비 계산 및 지급)

1. “버스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용역료에 대한 운행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학교”는 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학기 중 “학교” 방침으로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수수료의 80%를 지급하고, 관할청 지시에 의해 학교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용역수수료의 60%를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폭동, 소요 등 예견과 회피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여 버스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차량 및 운전자 배정)

1. “버스 회사”는 임차차량 및 운전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차량은 “버스 회사” 회사 소유차량으로, 2017년 8월 1일 이후 등록차량(최초등록일 기준)이어야 함]
2. 임차 차량은 “버스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서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 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 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등)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차량의 요건 등) 등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에 부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4. 운행거리 40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접수 가능하며, 추가 정밀점검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자 채용, 배치 및 관리 / 노무 관리 및 책임)

1. 운전자의 채용은 전적으로 “버스 회사”의 책임으로 한다.
2. “버스 회사”는 “학교”의 업무를 대행할 운전자를 아래 기준에 의거 배치한다.
 - 가. 자격 : 대형면허 소지자로 대형버스 운전 실무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나. 경력 : 최근 5년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인사사고가 없는 자
 - 다. 신원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및 기타 조회 결과 결격사유(음주 운전 포함)가 없는 자
 - 라. 연령: 만 30세 ~ 만 65세
(다만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근무자가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하의 경우 자격 유지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자에 한하여 매 학기 학교의 운행 승인을 받아야 함.)

3.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차량 점검 결과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음주 운전 행위
 -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 통화 행위
 -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행위
 - 라.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사.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 아.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5. “버스 회사”는 원활한 버스 운행 관리와 학교 측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운행이 있는 날(토, 일 제외) 최초 운행 시작 시각부터 최종 운행 종료 시각까지 전담 직원 1인(임원 또는 직원)을 교내에 상주시킨다.

제10조(스쿨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

1. 차량의 구분 : 임차차량은 등하교 운행을 위한 노선버스와 대내외 활동 운행을 위한 특별활동버스로 구분하되 해당 구분은 “학교”가 “버스 회사”와 협의하여 지정 변경할 수 있다.
2. 운행의 구분: “정규운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특별운행”은 정규운행 일정 외 운행으로 한다.
3. 운행 횟수 : 정규운행은 회수에 제한 없이 운행하며 특별운행은 각 차량별 연 9 회까지 별도 조건 없이 운행하고, 연 10회 이상의 운행에 대해서는 “학교”가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를 지급한다. 특별운행은 1일 운행을 1회로 간주한다.
4. “학교”가 방학캠프를 운영할 경우 “버스 회사”는 이를 위한 버스를 운행하며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제11조(차량관리 및 운행관련 사항)

1. “버스 회사”는 차량 운행 시 다음과 같은 안전운행 장치를 반드시 운용해야 한다.
 - 가. 차량 위치추적 및 탑승자 기록장치
 - 나. 차량용 CCTV(영상 보존기간 15일 확보) - 4채널 이상
 - 다. 무전기(운행시간 중 통신 대기상태 유지)
2. “버스 회사”는 “학교”가 지정하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도색하고,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를 위한 차량구조 변경을 시행한다. 그 비용은 “버스 회사”가 부담하며, 스쿨버스 운행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차량개조 및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3. “버스 회사”는 차량의 외부에 “한국외국인학교” 운행차량임을 나타낼 수 있는 도안을 학교측과 협의하여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도안 부착에 따른 경비는 “버스 회사”가 부담한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제반 신고 및 관리는 “버스회사”가 일괄 처리한다.
“버스 회사”는 본 계약 개시일 이전까지 “버스 회사”의 명의로 기재된

어린이 스쿨버스 신고를 완료한다.

제12조(제비용 부담)

1. "버스 회사"는 "학교"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비용이라 함은, 운전자 인건비, 운전자 식대, 차량유지관리비(차량 보험료, 취득등록세, 유류대, 차량 검사비, 차량 정비비, 차량 수리비, 사고 처리비, 타이어 손료, 세차 비, 주차비, 통행료) CCTV, Black box, 무전기, 운행기록계, 소화기 등 장비 구입 및 유지, 관리 비용 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칭한다.
2. 계약 기간 중 경유 가격이 기준가(1,900원) 대비 20%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가 초과분에 대해 '갑'과 '을'이 공동 부담하고 분기별로 정산한다. 다만, 기준가 대비 2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며, 정부 보조금 등 공적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반영하고 '갑'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

1. "버스 회사"는 계약 체결 완료 후 7일 이내에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2. "버스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버스 회사"의 책임으로 한다.
3. "버스 회사"는 종합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대인, 대물, 자손차량, 공동특약보험을 모두 현행 손해보험협회 산하 보험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보험가입배상 한도에 법적으로 적합한 보험으로 가입한다.
4. 대체차량 운행과 대리기사 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버스 회사"는 "학교"의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차량 운행과 대리기사 운행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1. 버스 회사는 인력관리 또는 차량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지연운행이 발생하거나, 운전자의 불친절·난폭운전 등 서비스 품질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확인되었거나 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경우,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학교는 버스 회사가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버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월1회	각서 제출
계약기간 내 3회	각서제출, 운전자 교체